## 최저임금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19. 1. 1.] [고용노동부령 제240호, 2018. 12. 3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근로기준정책과) 044-202-7535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「최저임금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2. 19.]

- **제2조(최저임금의 범위)** ① 「최저임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제1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
  - 2.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
  - 3.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(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임금
  - 4.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  -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, 장려가급(獎勵加給),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
  - 2.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

[전문개정 2018. 12. 31.]

- **제3조(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)** ① 법 제7조 및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 -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>
  - 1.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
  - 2.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  - 3.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(지적장애,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 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12. 19.]

- 제4조(사용자단체의 지정)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  - 1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  - 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  - 3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
  - 4.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

[전문개정 2011. 12. 19.]

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4조는 삭제 <2011. 12. 19.>]

- 제5조(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)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  - 1.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[전문개정 2011. 12. 19.]

제6조(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·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.

<개정 2013. 3. 23., 2018. 12. 31.>

[전문개정 2011. 12. 19.]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<2011. 12. 19.>]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2. 3.>

[본조신설 2014. 12. 31.]

제8조 삭제 <2011. 12. 19.>

부칙 <제240호,2018. 12. 3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